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조치일 : 2018. 1. 16.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 검토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로서 추출된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거래상품, 거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심스럽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개선

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를 전산화하여 특정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단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에 대해 1차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② 검찰 등 수사기관의 보험 거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및 사내 보험사기 조사건 등에 대해 사내 유관부서와 업무협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시 활용할 필요

(3) 고객확인 업무 미흡

① 고객확인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서류징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

②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필요

③ 법인 및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시 법규에서 정한 단계(①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 ②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 → ③ 대표자) 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